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복

2023. 6. 21.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함)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직렬 등” 이란 별표 1의 직렬을 말한다.
- “시설관리직렬 등” 이란 별표 2의 직렬을 말한다.

제4조(일반 원칙)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
- 해당 공무원의 근무희망기관 또는 생활근거지

제5조(장애공무원의 보직) 장애가 있는 공무원의 생활근거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2장 전보

제6조(전보 대상) ① 관내 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정기전보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연한이 도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연한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정기전보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연한이 도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기술직군(시설관리, 운전) - 5년 이상

2.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 - 3년 이상

④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 조정 등 부득이 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⑤ 전보희망자 및 전보대상자는 전보희망서에 근무희망기관을 표시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고충) 장애인공무원 또는 그 밖의 인사 고충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사 고충 상담 및 조사서를 제출한다.

제8조(전보 시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전보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전보 방법) ① 전보는 근무희망기관, 근무경력, 근무 기관 설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전보는 관내전보와 관내 전입자 전보로 구분 한다. 또한 관내전보는 감축, 순환, 일반 순으로 하고 관내 전입자 전보는 순환, 감축, 일반 순으로 한다.

③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전보는 전보서열부의 순위에 의하되 전보서열부 작성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22조를 준용 한다.

④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교육행정직렬 6급 공무원 과 신규임용자는 교육행정과 사무운영 직렬 공무원 정원이 3명 이상인 기관(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교육지원청 근무는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10조(휴직자의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결원이 보충된 경우의 복직자는 정기인사 시 전보희망서 등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전보희망서에 기재된 본인의 전보 순위 평정점을 참고하여 본인의 실적에 따라 판내 순환 또는 판내 일반전보로 분류하여 배치한다.

제11조(전보의 특례) 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2.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사람
3. 학교(기관)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만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공무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2. 인사고충상담, 조직부적응 등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③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거나 감사결과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전보한다.

제12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발생자 등 근무평정 적용 특례) 제9조 제8항에 따른 적용은 2017년 1월 1일자 정기인사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전보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행정직렬 등 공무원

직종	직군	직렬
일반직	행정	행정
		전산
		교육행정
		사서
		속기
	기술	공업
		보건
		식품위생
		간호
		시설
		방송통신

[별표 2]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

직종	직군	직렬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
	기술직군	운전
	기술직군	위생
	기술직군	조리
	기술직군	농업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사고충 상담 및 조사서

1. 대상 공무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생활근거지

2. 인사고충 내용 및 조사결과

구 분	내 역 (요 지)	비 고
○ 인사고충		
- 제 목		
- 내 용(요지)		
○ 상담 또는 조사결과		
○ 검토 및 처리의견		
○ 관련자료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학교(부서)장

(직/사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 이유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 필요
-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

■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 협행화
 - 동일 기관 필수 보직 기간 명시